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통일조정 대상업체 대표 귀하 (경유)

제목 페북소스타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 허가사항 변경명령(통일조정)

- 1. 관련 : 허가총괄담당관-6060호('22.11.30.)
- 2. 우리 처(허가총괄담당관)는 의약품 제조(수입)판매 품목 중 '페북소스타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'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(안)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- 3. 이에, 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•신고•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페북소스타 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' 품목의 허가(신고)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'23.01.02.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, 당해 업체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변경명령 사항을 업체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게재할 것 (단,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  - 나. 종이 허가증인 경우
  - 해당품목 품목허기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 뒷면(변경 및 처분사항 등)에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할 것

변경 및 처분사항 등		
년 월 일	내 용	
2023.01.02.	시용상의주의사항 ^	<u>(허가총괄담당관-호, 2022.11.30</u> .) ↑
변경일자	변경명령 항목 기재	변경명령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

- ※ 참고 :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(관련: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 ·심사 규정'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)
  - 품목허가증(또는 신고필증) 원본에 변경 명령한 내용(통일조정안)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·관리할 것
- 다. 전자 허가증인 경우,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확인할 것

- 4. 상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2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- 5. 아울러, 관련 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동 사항을  $\mathbb{R}^{\mathbb{R}}$  (신고)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(https://nedrug.mfds.go.kr) '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 허가승인 > 변경명령 '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붙임 1. 페북소스타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 통일조정 대상품목.
  - 2. 페북소스타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 변경대비표.
  - 3. 페북소스타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 사용상의주의사항.
  - 4. 페북소스타트 단일제(함량 40, 80mg, 필름코팅정) 사용상의주의사항(전문가). 끝.



협조자

시행 허가총괄담당관-6627 (2022.11.3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317 팩스번호 043-719-2300 / hhj0421@korea.kr / 비공개(7)

힘내라 대한민국!